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06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조은희 · 김용태 · 이성권
신성범 · 강명구 · 김재섭
이만희 · 박상웅 · 박정하
한동훈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부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16조제7호 신설).
- 나.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 다.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 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한다.

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부는 예산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하 “청년”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 권익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청년인지 예산서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년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권익 증진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3”을 “제68조의3, 제68조의4”로 한다.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4(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청년 권익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하고,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권익 증진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 제9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예산서의 제출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8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제6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제출 및 제7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 5. (생략) ④ ~ ⑪ (생략)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제73조의5----- -----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 설></u>	제16조(예산의 원칙)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정부는 예산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하 “청년”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7조의2(청년인지 예산서의 작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9의2. (생략)

<신설>

10. ~ 16. (생략)

<신설>

성) ① 정부는 예산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 권익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청년인지 예산서

10. ~ 16.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
 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
 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
 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청년인지 결산서에는 집행
 실적, 청년의 권익 증진 효과분
 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8조의3, 제68조의4-----

---. -----

-----.

제68조의4(청년인지 기금운용계

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

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에 미

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②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는 청년 권익 증진에 대한 기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 6의2. (생략)

<신설>

7. (생략)

<신설>

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현행과 같음)

제73조의4(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

<u>제73조의4</u>(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 (생략)	<u>서(이하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권익 증진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u> <u>제73조의5</u>(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 (현행 제73조의4와 같음)
--	---